

「강진 K-POP 콘서트」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

강진 K-POP 콘서트 행사 기간 중 푸드트럭 영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17년 9월 26일

강진군향토축제추진위원장



1. 공고내용

- 공 고 명 : 강진 K-POP 콘서트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
- 허가대수 : 5대
 - ※ 축제장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
- 장 소 :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종합운동장길 60
강진종합운동장 지정 장소
- 허가면적 : 대당 10m²
- 영업업종 :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 제8호에 따른 휴게
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

2. 사용허가 기간 : 2017. 10. 21.(토)

3. 참가비용 : 대당 15만원

- ※ 행사 기간 다수 신청자 감안 최소비용 제시

4. 신청방법 : 방문접수

5. 신청자격

-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

6.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

- 기 간 : 2017. 9. 26.(화) ~ 10. 11.(수) 18:00까지
- 제출처 : 문화관광과 사무실 /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강진군청 사무실(탐진로 111)

※ 대리인 접수시에는 위임장(붙임 3) 제출

○ 제출서류

- 차량 사진 1부.
-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 1부.(붙임 1)
- 사업계획서 1부.(붙임 2)
-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1부(본인)
- 주민등록증 사본 1부.
- 운전면허증 사본 1부.
- 푸드트럭 영업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류
 - 푸드트럭 운영자 명의의 자동차등록증(이동용 음식판매 용도),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, 위생교육증, 보건증
-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. (붙임 4)
-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
 -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.

-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, 건강보험 자격
 득실확인서(직장보험 미가입자), 기타 실업 상태임을 증명할 수
 있는 서류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
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

7. 대상자 선정절차 : 제출서류 심사 및 신청인의 열정과 의지, 경험
 등의 적정여부, 판매음식 메뉴 등 종합적 고려 적격 여부 확인
 가. 심사 및 발표

- 심사방법 : 신청서 서면 심사
- 심사발표 : 2017. 10. 12.(목)
- 발표장소 :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(<http://gangjinfestival.com/>)
 공지사항

나. 임대료 납부

- 납부기한 : 2017. 10. 13.(금) ~ 10. 16.(월) 18:00까지
- 송금계좌 : 농협중앙회 301-0218-9295-51
 (예금주 : 강진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)

※ 납부기한 내 임대료 미납시 푸드트럭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다. 푸드트럭 추첨

- 일 시 : 2017. 10. 17.(화) 15:00
- 장 소 : 강진군청 대회의실 (본관 2층)
- 대 상
-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완비 등 푸드트럭 임대 신청에 결격
 사유가 없고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여 푸드트럭 사용 대상으로
 선정된 단체(기관)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
- 방 법 : 접수순 번호표 배부 후 추첨을 통하여 푸드트럭 배정

8. 기타 유의사항

-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(이하 ‘사용자’라 한다)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-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,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본 응모에 대하여 별도의 현장 설명회가 없으니 응모자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하시고, (사업이 타당성 등) 기타 응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숙지 및 담당자에게 응모기간 내에 확인하셔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.
-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, 기 납부한 참가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.
 - 가. 제3자에게 양도·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
 - 나.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
- 사용자는 사용·수익허가 받은 목적을 승인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,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, 인테리어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, 권리금,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.
-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소, 전기,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,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전라남도 강진군의 해석에 의합니다.

10. 허가자 준수사항

- 영업신고 완료 후 계약기간 내 영업개시 가능합니다.
-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,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
- 영업개시 전, 상호 협의하에 판매 업종 및 품목을 정합니다.
- 영업에 필요한 전기, 상수, 가스, 오폐수 처리시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후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- 푸드트럭은 허가된 구역 내에서만 영업행위가 가능합니다.

11. 계약, 위치,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

강진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/ 전화번호 061-430-3331~4